

<붙임 2>

정관 중요사항의 변경 보고

※ 법 제418조제2호에 따른 정관 중요사항 변경시 작성한다.

1. 정관변경사유
사업 목적의 추가

2. 주요 변경내용
외국환 업무 추가

■ 첨부서류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정관 각 1부
2.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1부

정관 변경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 전 규정	개정 후 규정
제 2조(목적) 본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삭제) <변경없는 부분 생략>	제 2조(목적) 본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외국환업무(추가) 1.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추가) <변경없는 부분 현행과 동일>

현재 정관

제 2조(목적) 본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부동산 임대업

1.투자자문업

1.위 업무이외에 기획재정부장관 및 금융감독원장의 인가를 받은 업무

1.투자일임업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8항에 의한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제3호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판매업

1.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업무집행사원으로서 업무집행

1.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

1.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결성 및 업무의 집행

1.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보관·관리

1.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지분의 판매·환매

1.외국환업무

1.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